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2873 |
|----------|------|

2025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5. 26.
2. 제안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25. 5. 29.
4. 상정일자 :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5. 6.2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5. 6.26)
 - 승인

Ⅱ. 제안설명의 요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 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3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비비는
 - 예산액 63억 7천 9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1억 1천 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없으며, 12억 6천 5백만원이 집행잔액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5년 5월 26일 제출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개요

- '24회계연도 예비비는 200억원을 편성하여 63억 7,9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51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음

〈표 2-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 사용결정액(A) | 지출액(B) | 이월액(C) | 집행잔액(A-B-C) |
|--------|----------|--------|--------|-------------|
| 20,000 | 6,379 | 5,114 | - | 1,265 |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

1. 예비비 일반현황

(1) 예비비 편성

- 예비비는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음
 - 예비비의 편성규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24회계연도에 일반예비비 100억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7-1〉 예비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 분 | 본 예산 | 추경예산 증감액 (제1회 추경) | 최종 예산 |
|------------|---|--------|----------------------|--------|
| 합 | 계 | 20,000 | - | 20,000 |
| 일반예비비 | | 10,000 | - | 10,000 |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 10,000 | - | 10,000 |

(2) 예비비 지출

- 한 회계연도 동안 지출된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16년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별도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 있으며 매 분기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음
- '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비비 200억원에 대해 10건, 63억 7,90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51억 1,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사용결정액은 △96억 9,300만원 감소하고, 지출액은 △101억 6,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7-2〉 예비비 지출 현황 (2024~2023)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액 (A) | 사용결정 | | 지출액 (C) | 다음연도 이월액 (D) | 집행잔액 (E=B-C-D) |
|------------|------------|------|-----------|------------|--------------------|-------------------|
| | | 건수 | 금액 (B) | | | |
| 2024 | 20,000 | 10 | 6,379 | 5,114 | - | 1,265 |
| 2023 | 20,000 | 25 | 16,072 | 15,277 | 260 | 534 |
| 전년대비 증감 | - | △15 | △9,693 | △10,163 | △260 | 731 |

○ **일반예비비**는 '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결정액(63억 7,900만원)중 8건, 31억 700만원(48.7%)인 것으로 제출된 바,

- 기동보수반 퇴직근로자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포함한 **교육사업비** 5건은 일반예비비중 25억 3,7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15억 2,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됨
- 아울러 **봉화중 교사동 옥상 방수 공사**를 포함한 3건의 **시설사업비**에 대해 일반예비비 5억 6,90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4억 9,6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됨

〈표 7-3〉 일반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소관부서 | 사업명 | 사용결정액 (A) | 지출액 (B) | 이월액 (C) | 집행잔액 (D=A-B-C) |
|---------------|-----------|----------------------------|-----------|---------|---------|----------------|
| 합 계 (8 건) | | | 3,107 | 2,020 | - | 1,086 |
| 교육사업비 (5 건) | | | 2,537 | 1,524 | - | 1,013 |
| | 교육시설관리본부 | 기동보수반 퇴직근로자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 82 | 82 | - | 0 |
| | 총무과 | 민사소송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 24 | 24 | - | 0 |
| | 총무과 | 교육감 보궐선거 시·구 선거관리 경비 | 2,331 | 1,354 | - | 977 |
| | 정책기획관 |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 운영 | 87 | 59 | - | 28 |
| | 체육건강예술포교과 | 집회 참여 학생 대상 응급처치반 운영 | 10 | 2 | - | 7 |
| 시설사업비 (3 건) | | | 569 | 496 | - | 73 |
| | 동부교육지원청 | 봉화중 교사동 옥상 방수 공사 | 300 | 254 | - | 45 |
| | 교육시설관리본부 | 송곡여중 본관동 옥상 방수 공사 | 87 | 87 | - | - |
| | 교육시설관리본부 | 동대부여중 교사동 옥상 방수 공사 | 182 | 154 | - | 27 |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2건, 32억 7,200만원(51.3%)을 사용결정하여 30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음

- **교육사업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예산 지원**에 대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중 24억 4,90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24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 **시설사업비**의 경우에는 **가인초 교사동 화재 피해 복구 공사**에 대해 8억 2,20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6억 7,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함

〈표 7-4〉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부 서 | 사 업 명 | 사 용 결정액 (A) | 지출액 (B) | 이월액 (C) | 집행잔액 (D=A- B-C) |
|----------------|----------------------|---------------------|---------------------|--------------|--------------|-------------------------|
| 합 계 (2 건) | | | 3,272 | 3,093 | - | 179 |
| 교육 사업비 (1 건) | | | 2,449 | 2,417 | - | 32 |
| | 체 육 건 강 예 술 교 육 과 |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예산 지원 | 2,449 | 2,417 | - | 32 |
| 시설 사업비 (1 건) | | | 822 | 675 | - | 147 |
| | 북 교 육 지 원 부 청 | 가인초 교사동 화재 피해 복구 공사 | 822 | 675 | - | 147 |

2.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검토

(1)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소요경비 산출 검토 철저

○ 예비비 사용결정 내역 중 집행잔액률이 15% 이상 발생된 건은 6건, 12억 3,300만원으로 확인됨

〈표 7-5〉 예비비 집행잔액 발생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세부내역 | 사용결정액 (A) | 지 출 액 (B) | 집 행 잔 액 (C=A-B) | 집행잔액률 (C / A) | 예 비 비 사용승인일 |
|--------------------|--------------------------|----------------|----------------|--------------------|--------------------|----------------|
| 합 계 | | 3,734 | 2,500 | 1,233 | 33.0 | |
| 선 거 관 리 | 교육감 보궐선거 시·구 선거관리경비 | 2,331 | 1,354 | 977 | 41.9 | '24.10. 2 |
| 교 육 정 책 기 획 관 리 | 교육감 공약추진 위 원 회 운 영 | 87 | 59 | 28 | 32.2 | '24.11. 6 |
| 기 관 기 본 운 영 비 | 집회 참여학생 대상 응급처치반 운영 | 10 | 2 | 7 | 74.7 | '24.12.13 |
|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 동대부여중 교사동 옥 상 방 수 공 사 | 182 | 154 | 27 | 15.3 | '24. 4. 8 |
|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 봉화중 교사동 옥 상 방 수 공 사 | 300 | 254 | 45 | 15.2 | '24. 3. 5 |
|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 가인초 교사동 화재 피해복구 공사 | 822 | 675 | 147 | 17.9 | '24. 1.12 |

- **교육감 보궐선거 시·구 선거관리경비**는 '24년 10월 16일 교육감 보궐 선거가 확정되어 선거사무를 추진하는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에 **자치단체 선거관리 공통경비**를 지급하고자 예비비 23억 3,100만원을 사용결정한 것으로

■ 서울시 및 자치구는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선거관리경비중 13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24년 12월, 교육청에 집행잔액 9억 7,700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됨

- 예비비 집행결과 공약추진위원회 수당(1,300만원), 공약추진위원회 백서 검토 및 편집수당(1,100만원) 등 사용결정액(8,700만원)의 32.2%,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집회 참여 학생 대상 응급처치반 운영**은 '24년 12월,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가하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처치반을 운영하고자 운영비 1,0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4년 12월 12일, 군중 밀집지역에서 집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안전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하고 긴급히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으나, '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14일 당일에만 운영비를 집행한 것으로 사용결정액(1,000만원)의 74.7%, 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음

○ 예비비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되는 재원이나, 예비비는 예산의 성격상 지출결정된 이후에는 회계연도중 다시 예비비로 환원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예비비를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기간과 소요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거나 정밀한 추계에 한계가 있다면 발생한 긴급 수요의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수차례 예비비 지출을 요구하고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예비비에서 소송비용 집행 최소화 필요

- '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소송과 관련된 일반예비비 지출규모는 2건, 1억 700만원으로
 - ①기동보수반 퇴직근로자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 경우, '23년 11월, 교육시설관리본부 기동점검보수반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 진정을 제기해 지난 '24년 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명령함에 따라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8,200만원을 사용 결정 후 전액 지출한 것임
 - ②민사소송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의 경우, '23년 6월, 임용취소된 교원이 퇴직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24년 1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예비비 2,400만원을 사용 결정하고 전액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됨

〈표 7-6〉 소송관련 비용의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사 업 내 역 | 사용결정액 (A) | 지 출 액 (B) | 집 행 잔 액 (C=A-B) | 집행잔액률 (C / A) | 예 비 비 사용승인일 |
|--------|-----------------------------|----------------|----------------|----------------------|--------------------|----------------|
| 합 계 | | 107 | 107 | 0 | 0.0 | |
| 시설사업운영 | ①기동보수반 퇴직근로자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 82 | 82 | 0 | 0.0 | '24. 2.13 |
| 교원인건비 | ②민사소송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 24 | 24 | 0 | 0.0 | '24. 3.22 |

○ 소송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사례는 '22년도(2건, 3억 5,800만원)와 '23년도(7건, 99억 4,200만원)에 이어 '24년도에도 2건, 1억 7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 서울시교육청 「2024년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에 따르면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인 세부사업 **법무관리중 소송관리** 항목에서 소송비용 등이 편성되어 있어 소송비용을 소송관리 사업에서 우선 집행하지 아니하고 예비비에서 지출결정한 것이 적합한 지출결정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예비비 지출 사례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소송에 패소하여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관리담당관 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24년 1월, 동 소송비용 발생 시, 행정관리 담당관은 **소송관리** 예산 해당 항목에서 이미 다른 소송비용이 지출 예정 되어 여유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부서에 소송비용을 예비비로 사용요청 한 것으로 확인됨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으므로 동 사례는 사업 예산의 초과 지출이 예상되어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사료되나,

■ 소송관리 항목이 속한 세부사업 **법무관리**의 '24년도 집행잔액이 4억 1,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예비비 지출을 제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 따라 예비비 사용결정 전 동일 세부사업 내 혹은 다른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의 재원을 사용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예비비를 통해 지출하는 것은 예비비 편성 취지에서 벗어나는 사안은 아니나, 긴급히 발생하는 재해·재난, 예측 불가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비비의 재원을 잠식시킬 수 있어 소송에 따른 예비비 사용요구와 지출결정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우선 사용 필요

○ 관련 법령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의 제한(일반회계 예산총액 100분의 1 이내)과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교육청은 '24회계연도에 일반예비비는 100억원을 편성하여 8건, 20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00억원을 편성하여 2건, 30억 9,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7-7〉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지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 분 | 최종예산액 (A) | 사 용 결 정 | | 지 출 액 (C) | 집 행 잔 액 (D=B-C) |
|---|-----------|----------------|---------|----------|----------------|----------------------|
| | | | 건 수 | 금액 (B) | | |
| 일 | 반 예 비 비 | 10,000 | 8 | 3,107 | 2,020 | 1,086 |
| 재 | 해·재난목적예비비 | 10,000 | 2 | 3,272 | 3,093 | 179 |

- 교육부의 관련 기준 중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원가통계목을 상호구분하고 있어 예비비 사용결정시 사업 내용에 따라 예비비를 구분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 '24회계연도 예비비 건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난 '24년 2월, 눈, 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보수비**를 일반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제출되어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일부 혼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됨
 - 사업부서에서는 시설보수를 위한 예비비 집행의 경우, ‘노후시설 수리’는 일반예비비로, ‘화재’나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인 경우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 지난 '22년 8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보수비를 일반예비비로 집행하는 등 유사 사례가 이전년도 집행내역에서 확인되는 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일부 혼용되어 구분이 불명확한 것으로 사료됨
- 현행 「지방재정법」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혼용될 여지가 있으나,
- 관련 법령에서는 “재난”을 태풍, 홍수, 대설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인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인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의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법에 명시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 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승인(2025. 6.26)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 |
|----------|------|
| 의안 번호 | 2873 |
|----------|------|

제출연월일 : 2025년 5월 23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 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3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2. 예비비 지출내역

가. 지출내역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7개 사업, 총 10건

(단위 : 천원)

| 예산액 | 지출결정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집행잔액 | 비고 |
|------------|-----------|-----------|---------|-----------|----|
| 20,000,000 | 6,379,661 | 5,114,136 | 0 | 1,265,525 | |

나. 세부내역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참조